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05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3 ~ 06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 ~ 0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3 ~ 08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5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05
----------	-----------

제출일자	2013. 01. 18.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

나.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함.(안 제6조)

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취득시점 기준으로 감면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01.07. ~ 01.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 중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 그 공장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p>	<p>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u>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06
----------	-----------

제출일자	2013. 01. 18.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 추진에 따라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
(안 제6조, 제7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제3항)
- ※ 전자수입증지 발급 대상(시스템) 확대
 - 종전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추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12. 12. ~ 2013. 01. 0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중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6조 단서 중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등” 으로 한다.

제17조 제목을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사용 수입금의 정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상” 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으로 한다.

별표 1·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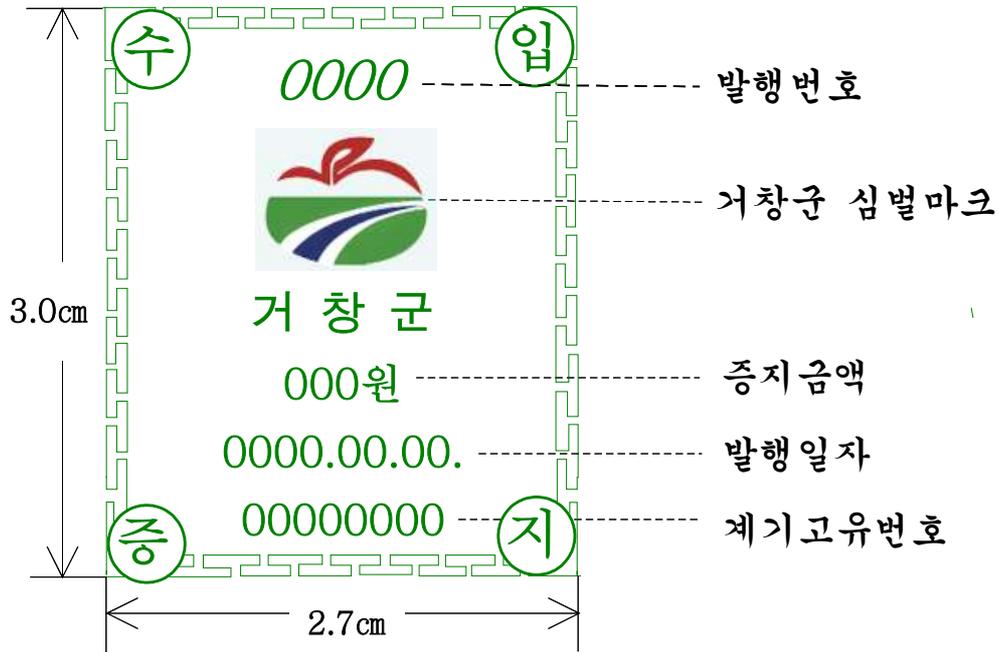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p>	<p>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이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 ----- -----</p> <p>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 ----- -----</p> <p>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 ----- ----- -----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u>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u> 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p>	<p>제16조(판매인 수수료) ----- ----- ----- ----- -----<u>무인 민원증명발급기 등</u>----- -----</p>
<p>제17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생략) ② 계기 및 <u>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u>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u>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u>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 및 <u>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상</u>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17조(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u>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u>----- ----- ----- ----- ③ -----<u>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u>----- ----- ----- -----<u>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등</u>----- -----</p>

[별표 1]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인영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7조 관련)



※ 인영 색상 : 녹색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판매계약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거창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합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에서 m)

2. 직 업 :

3. 첨부서류 :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관리대장

총괄

년 월 일

번호	금 일 까 지 누 계	전 일 까 지 누 계	금 일 결 손		금 일 발 행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금일발행 내역

- 1. ○ ○ 원 × ○ ○ 매 = ○ ○ 원
- 2. ○ ○ 원 × ○ ○ 매 = ○ ○ 원
- 3. ○ ○ 원 × ○ ○ 매 = ○ ○ 원
- 4. ○ ○ 원 × ○ ○ 매 = ○ ○ 원
- 5. ○ ○ 원 × ○ ○ 매 = ○ ○ 원
- 계 ○ ○ 원정

결손사유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07
----------	-----------

제출일자	2013. 01. 18.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함(인상 20종, 인하 13종)(안 별표 1)
-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를 신설함(23종)(안 별표 1)
- 다.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조례로 정해진 사무에 대한 수수료 삭제(3종)(안 별표 1)
- 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세분화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24111호)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2. 12. ~ 2013. 01. 0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사항			
(1) 이장재직사실확인	1통	800	
(2) 재직(퇴직,경력)증명	1통	1,000	
(3)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4) 독자사실확인	1통	1,000	
(5)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사실확인	1통	1,000	
2.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 ※ 동일필지 공시일자별 추가	1필지	800 200	
(2) 개별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3) 공동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 인 (나) 개 인	1건 1건	30,000 2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6)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7)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3.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4.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	
5.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4)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9)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10)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	
(1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0	
(12)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	
(13)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	
(14)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	
(15)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16)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1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18)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20)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6. 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1건	30,000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8)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	
(9)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	
(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15)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	
(16) 영화업 신고	1건	20,000	
(17)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1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19)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20)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21)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22)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23)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2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2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28)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2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0)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3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3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3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7. 환경 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	
(3)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2)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4)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5)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9.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1) 공(시)영주택분양금납부 증명	1통	800	
(2) 표준주택 설계도면	1호	1,5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4)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건	1,000	
(5)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6)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9)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1,000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000	
(11)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건	1,000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1,000	
(13)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1건	1,000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컬러 발급의 경우	1필지 “	1,000 1,500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5)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6)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7)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8)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9)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0)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1)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	
(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	
(다)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1건	40,000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나)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에 한함)	1건	10,000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에 한함)	1건	10,000	
12.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사신청	1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	2,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방서 교부			
(가) 신 규	1건	4,000	
(나) 갱 신	1건	2,000	
(4) 급수공사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	
※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설계금액의 100분의1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5) 시공자재 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	
(6) 준공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000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8) 정수처분 해제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	
13.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500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08
----------	-----------

제출년월일	2013. 01. 18.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의 피해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제외규정을 두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군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 하여야한다.

다. 지원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라. 지원제외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마.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 재난지원금 지급,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조, 제8조·제9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3천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2. 27. ~ 2013. 01.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 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호우·강풍·대설·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조문 :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과 년 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2010년	2111년	2012년						
세출	도 비									
	군 비	0	0	193	60	60	60	60	60	300
	소계(a)	0	0	193	60	60	60	60	60	300
세입	도 비									
	지방세									
	소계(b)									
총비용(a-b)		0	0	193	60	60	60	60	60	300

3. 관련 의견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5.23)에 따른 국고에서 지원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 100이상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복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재난지수 300 ~ 100이상 피해농가 지원액을 반영하여 비용추계 : 318농가 57백만원

작성자 : 재난관리과장 이 동 순